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4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김원이・위성곤・김한규

양문석 • 한준호 • 신정훈

박지혜 • 박희승 • 이정문

김선민 · 모경종 · 이재관

서삼석 • 민병덕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위탁기업의 불 공정 거래행위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해당 과징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용도로는 쓰이지 않고 있음.

피해 중소기업은 피해액 청구 등을 위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기업 내부에 법무 전문인력을 갖춘 경우가 드물고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장기간의 소송으로 최 종 선고까지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 한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징금을 추가하고, 이를 대기업 등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20조의5).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제3항 중 "내국법인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중 "제3항"을 "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내국법인의 출연금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6.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의 설치 등) ①・② (생	기금의 설치 등)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상생협력기금은 <u>내국법인</u>	③ <u>다음 각 호</u>
<u>출연금 등</u> 으로 조성한다.	의 재원
<u><신 설></u>	1. 내국법인의 출연금
<u><신 설></u>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징
	수한 과징금
<u><신 설></u>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u> </u>
<u><신 설></u>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입금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	④ <u>제3항제1호</u>
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	
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	
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	5
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i	i
<u> <신 설></u>	6.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
	해 기업 지원 사업
<u>6.·7.</u> (생 략)	<u>7.·8.</u>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